2023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3년 12월 28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신 성 환 위 원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지 중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최 창 호 조사국장

김 인 구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박 종 우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권 민 수 외자운용원장 민 준 규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47호 -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 (2023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함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는 한층 높아진 민간신용 레버리지 수준, 주택시장 회복세 둔화, 기업과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 증대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등을 살펴보 는 가운데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세 약화, 부동산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금번 보고서의 주요 정책대응 및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PF 관련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기관의 자본과 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감안한 복원력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가계 및 기업의 연체율 상승세가 우려할만한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건설업, 도소매 업종에 공급된 기업신용의 경우 향후 부동산경기의 향방과 소비회복 여부에 따라 관련 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충분히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음으로 12월 1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부 위원은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에서 가계신용증가율 등이 장기평균에 비해 낮아 최근의 가계부문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지적하면서, GDP대비 가계신용 규모 등을 추가하여 가계신용 누증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과 리스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현재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일부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리스크 중 부동산PF가 보 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의 증가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항인데 반해, 기업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상당폭 증가하였고 최근 금리 상황과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대출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간 경쟁은 건전한 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간 예금조달 경쟁의 영향을 서술할 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그 밖에 여러 위원들은 높은 금리수준 하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 관련 정책자금 공급 확대의 영향에 대해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

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안)(생략)

<의안 제48호 -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12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고빈도 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통합 스트 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 정보공유 등을 통해 리스 크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금융시스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여러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대출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 타내었음.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 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생략)

<의안 제49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1조 제2항, 제28조 제9호 및 제80조에 의거 금통위가 2020년 12월 24일 의결한「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및 2021년 6월 30일 의결한「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에 따라 동 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금의 만기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하여 만기를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12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관련부서는 최근의 회사채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SPV에 대한 신규대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SPV 설립 당시 매입한 회사채를 만기까지 지원하기로 한 점, 당행의 대출금 회수시 보유자산 매각 외에는 상환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대출금중 조기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을 재대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이에 모든 위원들은 제2회 대출금 재대출 안건에 대해 동의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향후 위기 상황에서 SPV를 활용한 비상정책수단 가동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번 SPV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 등을 정리하고 정책효과 등을 점검하여 향후 정 책운용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 (생략)